

학교급식용 우유구매계약 특수조건

일동초등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일동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7:00-07:30)**에 납품하여야 하며, **반별로 배분**하여 우유급식 전용 냉장고에 제공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되는 우유는 2일전~당일에 제조된 신선한 우유를 냉장유통(5℃/동절기 10℃이하)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하며, 모든 우유는 유통기한이 동일한 제품으로 공급 한다.**

④ 우유 공급·보관을 위한 기기관리 등의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전담하며, 냉장설비 가동, 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 설치 및 고장수리, 전기료 등) 또한 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대 및 우유상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우유급식 운영

가. 수량 : 56,640개

(※우유 희망조사 결과 신청인원 및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수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품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1A등급 국내산원유 100%,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제품

다. 용량 : 200ml(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 이상)

라. 기간 : 2019.03.18. ~ 2020.02.29.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검식 및 보존식용 우유 2개를 급식일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방학 중 우유 보조급식 대상 학생에게는 해당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를 공급한다. 멸균유를 공급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가정배달 시에는 가정에 배달되는 일자를 미리 학생에게 통지하여 우유가 상온에 방치되거나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0~10℃이하) 이하의 냉장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설치한 우유냉장고 내부온도를 0~10℃로 유지해야 하며, 주1회이상 내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취급 및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우유팩은 납품 다음날 청결하게 회수하며, 폐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우유 운반 중 발생하는 포장재는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및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납품청구 및 대가지급) 계약상대자는 **매월** 물품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단가*납품일수*명수**→산출식에 의해 납품금액을 청구한다. 이때, **(1인 기준)계약단가*납품일수=총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

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추후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제한업체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 ⑤ **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⑥ 학교장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계약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목적 외 사용금지
- ② 제3자 제공 금지
- ③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 이내)

제13조(기 타)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및 2019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